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791,764,575 | 23,752,937 |
| 일반회계 | 780,381,490 | 23,411,445 |
| 특별회계 | 11,383,085 | 341,493 |
| 기타특별회계 | 11,383,085 | 341,493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1,295,605 | 38,868 |
| 주차장 특별회계 | 9,495,983 | 284,879 |
|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| 65,191 | 1,956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437,381 | 13,121 |
|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| 88,925 | 2,668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 5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497,03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